
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

□ 평가개요

○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의의

-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상생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

○ 평가절차

- 평가 대상기관은 상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이하 “산업부장관”이라 한다)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산업부장관은 매년 그 평가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□ 평가기준

○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: 한국석유공사 (공기업형 / 공기업)

○ 평가내용 : ①기관장의 추진의지 ②핵심과제 ③기타과제 ④체감도 조사 등 기관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한다.

○ 평가등급 : 우수, 양호, 보통, 개선(4개 등급)

- 비율 : 유형별(대분류) 각 15%, 35% 35%, 15%범위 내 중기부 최종결정
- 100점 만점 : 정량 16개 지표(82점), 정성 3개 분야(12점)
- 동반성장 추진실적, 거래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등 합산 평가등급 산정

□ 평가결과 : 개선

